

'05. 12. 23(금)
제245회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12. 23.
제245회 정례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5년 1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12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공공기관 이전 전담기구 설치, 지행정혁신·사업별예산제도·과
거사 정리업무 추진관련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 2,595명 ⇒ 2,616명 (증2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9명 ⇒ 1,460명 (증2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원 : 증 21명
 - 일반직 : 21명(4급1, 5급4, 6급7, 7급4, 8급5)
- 한시직급정원 존속기한
 - 본청(4급1) : 2007년 6월 30일까지
- 한시정원 존속기한
 - 본청(6급1) : 2006년 12월 31일까지
 - 본청(5급1, 6급1, 7급1) : 2007년 6월 30일까지
 - 본청(6급1, 7급1) : 2007년 12월 31일까지
 - 본청(4급1, 5급3, 6급4, 7급2, 8급5) : 2008년 10월 30일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담조직 신설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 일반직 2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2,595명에서 21명을 증원하여 2,616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기구와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은 변동이 없음.
- 증원내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담조직 신설 15명(1과 3담당), 지방행정혁신업무 추진 3명(1담당),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2명,

과거사정리 업무 추진 1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4명, 6급 7명, 7급 4명, 8급 5명이 되겠음.

[표 -1] 증원내역

부 서 별	증 원 내 역 (명)						존속기한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21	1	4	7	4	5	
공공기관이전 기획단(가칭)	15	1	3	4	2	5	2008.10.30
혁신분권과	3		1	1	1		2007. 6.30
예산담당관실	2			1	1		2007.12.31
자치행정과	1			1			2006.12.31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업무 전담조직 신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신설되는 것으로 1과 3담당에 정원은 15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5명이며, 2008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정원임.

다. 지방행정혁신업무 등 인력 보강

- 중앙정부는 지방행정혁신 진단결과 빠른 속도로 혁신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부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고객만족행정 혁신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혁신분권과에 고객만족행정담당을 신설하고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3명을 보강하며 기존의 혁신분권과 정원과 같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됨.

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

-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 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행정 6급 1명과 전산 7급 1명이 보강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임.

마.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인력 보강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인력보강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및 건국 전·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서 접수와 상담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에는 행정 6급 1명, 시군에는 행정 7급 1명이 보강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임.

바. 검토내역 및 의견

- 이번에 증원되는 21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건설 등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해당사업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심도있는 안전심사를 위해서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경우 일부 미완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원 전부를 연장하여야 되는지
-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 혁신분권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등 현재에도 상당한 한시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시정원의 운영

상황과 향후 해소대책에 대한 설명과

- 표준정원대비 현정원 운영상황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총액 인건비 제도와 연계하여 정원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595명”을 “2,616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39명”을 “1,460명”으로 한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595명을 2,616명(증원 21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47명을 968명(증원 21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직급정원)집행기관의 정원 중 별표의 본청정원 4급 1명의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③(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중 별표의 본청정원 6급 1명의 정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명(5급1, 6급1, 7급1)의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명(6급1, 7급1)의 정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5명(4급1, 5급3, 6급4, 7급2, 8급5)의 정원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화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정 원	2,616	968	65	1,290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 계	1,065	801	40	63	161
	2~3급	1		1		
	3 급	7	5		1	1
	4 급	56	37	7	4	8
	5 급	208	165	7	14	22
	6 급	356	271	13	18	54
	7 급	377	279	12	22	64
	8 급	59	43		4	12
일 반 정	소 계	4	3	1		
	5 급	2	1	1		
	6 급	1	1			
	7 급	1	1			
별정직	소 계	17	10	1	5	1
	1 급	1	1			
	5 급	2	2			
	6 급	9	3		5	1
	7 급	3	2	1		
	8 급	1	1			
연구직	소 계	139	1		109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8	1		91	26
지도직	소 계	24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18	
소방직	소 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소방사	417	2		415		
교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사	32			32	
	조 교	11			11	
기능직	소 계	275	93	23	57	102
	6 급	9	6	1	1	1
	7 급	29	10	3	4	12
	8 급	54	17	1	4	32
	9 급	88	24	8	29	27
	10 급	95	36	10	19	30

산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59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9명</u></p> <p>2. ~ 4. (생 략)</p>	<p>제2조 (정원의 총수) <u>2,616명</u></p> <p>1. : <u>1,460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한시정원)①~⑤ (생략)

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⑨(생략)

제21조 (정원의 규정)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신설
- 정원의 총수 : 2,595명 ⇒ 2,616명(증21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077,250	
°인건비	872,031	
- 기본급	399,070	*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4급(1명) : 20호봉 기준 - 5급(4명) : 18호봉 기준 - 6급(7명) : 18호봉 기준 - 7급(4명) : 15호봉 기준 - 8급(5명) : 12호봉 기준
- 수 당	246,712	
- 정액급식비	32,760	
- 교통보조비	32,760	
- 명절휴가비	49,881	
- 가계지원비	83,137	
- 연가보상비	27,711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물건비	50,94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	
- 직책급업무추진비	4,200	
- 직급보조비	42,84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전경비	154,279	
- 성과상여금	13,299	
- 연금부담금	98,153	
- 국민건강보험금	18,441	
- 연금지급금	24,386	